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집회·시위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근거 마련〉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76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2. 조문별 검토	9
(1) 법률의 목적(안 제1조)	9
(2) 정의(안 제2조)	12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안 제3조 및 제4조)	13
(4)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및 우선 지급, 지원금의 환수 및 이의신청 등(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4
(5)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안 제9조)	18
(6) 정보 제공 요청 등(안 제10조)	20
(7) 실태조사(안 제11조)	23
(8) 용자 지원 등(안 제12조)	24
(9) 조세의 감면(안 제13조)	26
(10) 권한 등의 위임·위탁, 벌칙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27
(11) 시행일 및 유효기간(안 부칙)	3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광상언의원 등 54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30.
3. 회부연월일 : 2025. 5.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이 있었던 2025년 4월 4일까지 광화문광장, 헌법재판소 인근을 포함한 종로구에서 약 4개월간 집회·시위가 이어졌음. 종로구에 신고된 집회는 무려 438건인데, 이 중 81건이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안국역 주변에서 진행되었음. 총 누적 집회기간은 4,097일이고, 총 신고인원은 1,136만 여명에 달함. 집회·시위 현장에 동원된 소방대원은 640명이고, 차량은 95대였으며, 현장에서 24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음(2024. 12. 4.경부터 2025. 2. 28.까지 집계된 결과).

위와 같은 집회·시위 및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주요 진입로 통제와 소음 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중

로구의 유동인구가 급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으나, 집회·시위 및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집회·시위 및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나 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시위 및 이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집회·시위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종로구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하여 매출액 감소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환수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바. 집회·시위와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사.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년 12월 16일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현황조사’(조사기간: 2024.12.10.~12.12.)에 따르면, 조사대상(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의 46.9%(237명)가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으며,¹⁾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요 피해 사례로는 ‘송년회 등 연말 단체회식 취소’(외식업), ‘여행객의 투숙 취소 및 안전 여부 문의’(숙박업) 등이 있었음.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2024년 12월 12일에 공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조사기간: 2024.12.10.~12.12.)에 따르면, 조사대상(소상공인 1,630명)의 88.4%(1,441명)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응답시점까지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고, 89.2%는 사업체의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음.²⁾

이와 관련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2024년 12월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선고된 2025년 4월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개최되었던 대규모 집회·시위 및 이에 대한

1)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10명 중 5명 피해”, 2024.12.16.

2) 소상공인연합회 보도참조자료, “소상공인연합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24.12.12.

경찰의 교통 통제 등 질서 유지 차원 행정조치의 영향으로 매출액 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³⁾

종로구에 따르면, 관내 식당, 카페, 주점 등 50여 곳의 표본 상점을 대상으로 2024년 3월과 2025년 3월 매출을 비교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매출이 50%에서 80%까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종로구는 헌법재판소 일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지원 및 세금 유예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⁴⁾

한편, 종로구의회는 대통령실, 국회 등에 종로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⁵⁾으로 선포하여 피해를 보상하고 특별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2025.4.22.)한 바 있음.⁶⁾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비상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부터 대통령

3)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4.9.) 회의록, pp.40-43
경향신문, ““탄핵 찬·반 시위에 망하겠어요”...매출 80% 줄어든 도심 상인들 ‘울상’”, 2025.4.3.
투데이신문, “[르포] 탄핵 그 후, 현재 앞 자영업자... 여전히 껌껌한 매출 회복”, 2025.5.3.

4) 종로구청 보도자료,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종로구, 현재 인근 상인·주민 지원책 강구”, 2025.4.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6)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076)

과면 결정 선고(2025년 4월 4일)까지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시위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고 경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경찰력 동원 등 국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법률과 구별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임.

제정안에 따라 종로구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및 융자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액 감소 등 경영이 악화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재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법인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반법이 있는바,

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종로구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한 가능성 내지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2025년 11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⁷⁾하고 있는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집회·시위의 영향으로 중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20961호, 2025. 5. 27. 일부개정, 2025. 11. 28. 시행)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이자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로구 소상공인이 입은 매출액 감소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동법에 따른 ‘사회재난’⁸⁾으로서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또한, 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까지 발생한 집회·시위에 따른 경제적 피해 회복 지원의 대상을 종로구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취지가 해당 시기에 매출액 감소 등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소상공인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바,

지원 대상을 종로구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지원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별·업종별 해당 시기 매출액 감소 현황 등 피해 실태를 선행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아울러, 제정안에 따라 집회·시위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에게 피해 회복 지원금 지급 및 용자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재정 소요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에 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⁹⁾에서 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집회·시위로 매출액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금 등을 지급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지원금 규모 등은 실태조사 및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종로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집회·시위로 인한 영업 피해는 국가의 직접적인 행정조치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손실보상 방식의 지원은 적절하지 않고, 유동인구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한 영업 피해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2. 조문별 검토

(1) 법률의 목적(안 제1조)

9) 국회예산정책처,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5.7.11.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시위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는 비상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부터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2025년 4월 4일)까지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시위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의 취지는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시위 및 이와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피해를 ‘손실’로 보고, 이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인바,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하므로,¹⁰⁾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까지 발생한 집회·시위 및 관련 공권력 행사와 종로구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등 경제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국가재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10)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실보상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응하기 위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 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그 사인에게 조절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임(대판 2013.6.14., 2010다9658).(출처: 홍정선, 「기본행정법」(제12판), 2024, pp.303-304.)

참고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¹¹⁾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¹²⁾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시위로 인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피해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영업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집회·시위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 문언상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아울러, 집회·시위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사실상의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은 현행 법체계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써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홍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하 생략)

(2)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회·시위”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한다. 2. “종로구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로구인 자를 말한다.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집회·시위”, “종로구 소상공인”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안 제2조제1호는 “집회·시위”의 의미를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¹³⁾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및 시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주소
 - 나. 성명
 - 다. 직업
 -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집회·시위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집회·시위를 배제함으로써 제정안의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안 제3조 및 제4조)

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집회·시위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발생한 집회·시위와 관련된 종로구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안 제3조는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집회·시위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안 제4조는 제정안이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발생한 집회·시위와 관련된 종로구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법인 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일반법 사이에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

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4)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및 우선 지급, 지원금의 환수 및 이의신청 등(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 정 안
제5조(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회·시위로 매출액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금 지급 및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우선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액(이하 이 항에서 “우선 지급액”이라 한다)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우선 지급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상환 또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지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5조제3항,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집회·시위로 매출액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금의 우선 지급 및 환수, 지원금에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감염병 예방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손실보상금의 신청, 지급, 환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¹⁴⁾를 참고할 필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1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른 우선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이하 이 항에서 “우선 지원액”이라 한다)을 감안하여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요가 있어 보임.

다만, 안 제6조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안 제9조에 따른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매출액 감소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의 우선 지급에 대한 적절성 및 현실가능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바,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¹⁵⁾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수 있으며, 우선 지원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상환 또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2조의3(이의신청) ① 제1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22의2. (생략)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이하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회·시위와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고, 제정안이 “보상금”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장관이 집회·시위 기간 중 “영업이 위축된” 종로구 소상공인에게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⁶⁾

그리고 우선 지급은 통상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의 액수가 산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지원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¹⁷⁾에 규정되는바, 제정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 우선 지급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및 우선 지급에 따른 행정력 소모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6) 단, 중소기업부는 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구조금)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①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금 지급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금 우선 지급, 상환 또는 반납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신청인의 매출액 감소율 및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종로구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9조는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의견청취 절차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¹⁸⁾를

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소기업부차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원의 자격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따른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와 유사하므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나, 중소기업부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기업부차관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상환·반납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미지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장임.

(6) 정보 제공 요청 등(안 제10조)

제정안
제10조(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지원금 지급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안 제10조는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

업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의 대상에 관한 인적사항, 과세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해당 정보를 심의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 종료 시 파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집회·시위로 매출액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손실보상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요청, 처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¹⁹⁾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히, 과세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20)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국가행정기관 등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이 가능하므로, 제정안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확보·공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안 제10조제3항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21)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심의위원회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2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법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이하 생략)

2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 과세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리고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회·시위 및 이와 관련된 질서유지 조치 등에 관한 정보²²⁾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실태조사(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로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시위와 관련된 피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안 제11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회·시위와 관련된 피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집회·시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점²³⁾을 감안할 때 입법례²⁴⁾를 참고하여 실태조사와 관련한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신고(법 제6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법 제8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법 제12조), 질서유지선의 설정(법 제13조), 확장기등 사용의 제한(법 제14조) 등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8) 용자 지원 등(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용자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회·시위와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용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용자를 받은 자가 용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2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집회·시위와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용자하게 할 수 있도록

23)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집회·시위 관련 자료는 경찰청이, 소상공인의 피해 관련 과세자료는 국세청이, 영업 인허가 등 관련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음.

2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의 지역별·업종별 사업전환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의 지역별·업종별 매출액, 부도율 등 사업전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해당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의 취지는 집회·시위와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²⁵⁾에 따라서도

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종로구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회·시위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도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원금에 추가하여 융자 지원의 근거까지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조세의 감면(안 제13조)

제 정 안
제1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안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매출액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하 생략)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직접 규정되어야 하는바,²⁶⁾ 기타 개별 법률의 규정 자체만으로는 직접 조세감면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므로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⁷⁾

기획재정부는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는바, 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 조세특례를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관계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제정안의 지방세 관련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0) 권한 등의 위임·위탁, 벌칙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정안
제1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6)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이하 생략)

27)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5., p.500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벌칙)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4조는 제정안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안 제15조는 안 제9조에 따른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벌칙²⁸⁾을

28)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16조는 안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정안에 따른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의 내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²⁹⁾를 참고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16조와 관련하여, 제정안에 따른 벌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바³⁰⁾에 비하여 정보주체의 권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 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익 보호가 약화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므로 제정안의 벌칙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1) 시행일 및 유효기간(안 부칙)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안 부칙 제1조는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하위법령 준비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부칙 제2조는 제정안이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이 한시법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있음.

법률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면 별도의 폐지 절차가 없더라도 예정된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법률의 효력이 소멸되는바, 당초 정책의 한시적 시행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할 경우 유효기간을 미리 정하는 것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³¹⁾

다만,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 중의 위법행위를 그 실효 후에도 처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실효된 법률을 적용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안 제16조와 관련하여 제정안이 실효된 경우에 종전의 위반행위를 실효 후에도 처벌할 입법 필요성이 있는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를 논의가 필요해 보임.³²⁾

또한, 제정안의 따른 지원금의 신청, 지급 및 우선 지급, 환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의 유효기간이 끝나도 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해당 법률에 따라 진행되던 각종 행정작용·사무 등을 계속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 후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³³⁾

3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개정증보판), 2024.5., p.830

32)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개정증보판), 2024.5., pp.833-834

33)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개정증보판), 2024.5., pp.834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지원금 지급 후
오지급·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등 사후절차 시행을 위하여 유효기
간을 7년³⁴⁾ 이상으로 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34) 중소기업부는 지원금 집행 소요기간(최소 1년), 부정수급 등 관련 사실의 발견·확인
에 따른 환수 명령 소요기간(최소 1년), 국세 체납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환수 명령 후 5
년 또는 10년) 등을 감안하여 최소 7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함.